

연구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학술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연구년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연구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원은 본 대학교에 7년 이상 근속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교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5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04.01.)

1. 최근 2년간 평균 교원업적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교원(개정 2016.11.29.)
2. 1년 이내에 복직하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원
3.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요청중이거나 징계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교원
4. 연구년 신청일 기준으로 임용일 이후 연평균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논문실적이 100% 이상인 교원이어야 하며, 2차 이상의 연구년은 직전연구년 종료후 연구년 신청시까지 연평균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논문실적이 100% 이상인 교원. 단, 예능계열의 경우 국내저명학술지 실적은 국내 A급 무대(전시장) 공연 및 전시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대체비율은 1:1로 한다.)(신설 2012.08.10) (개정 2015.06.16.)
5. 연구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임상의학교원 업적평가규정 별표 3의 연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 기준으로 주저자 논문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교원(신설 2016.04.01.)

②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중에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또는 징계처분 종료일 익일로부터 재직년수를 다시 계산한다.

③2차 이상의 연구년은 직전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6년 미만근속한 자의 경우 6개월을, 6년 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 1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3-2-5~2 제3편 행 정

6개월 연구년의 자격은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년 연구년의 자격은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연구년의 신청은 소속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원은 연구년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2.)

1. 연구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1부
2. 연구경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3. 연구교수추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4. 서약서(별지서식 제5호) 1부
5. 임상교원은 해당병원장의 동의서 1부

③제2항 제1호의 연구계획서에는 연구계획명세서를, 제2항 제2호의 연구경력서에는 연구경력명세서를 각각 별첨서류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년의 승인) ①연구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연구년을 신청한 교수의 수가 제2항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연구년을 한번도 부여받지 못하고 근속기간이 오래된 교원을 1순위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교원은 의과대학 단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1.)

②연구년 교원의 수는 해당 학과(전공)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연구년 교원의 수는 임상교원을 제외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총수의 7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2. 학과·전공별 연구년 교원 수는 매학기 소속 전임교원의 7분의 1 이내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상한 수로 한다.
3. 학과·전공별 연구년 교원 수와 휴직, 파견, 연수교원 등 매학기 복무중이 아닌 수가 해당학기 소속 전임교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학과·전공별 재직 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에 재임중인 교원은 제3조의 자격에 의한 연구년 신청이외에, 보직임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연구년 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직 종료 후에 즉시 연구년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부총장, 처장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중에는 교원업적평가 및 연구실적에 대한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08.10., 2015.06.16., 2018.08.23.)

④ 총장이 승인하는 자는 제3조 및 제5조 ①~③항과 관계없이 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06.16.)

제6조(연구년 기간) ①연구년 교원의 연구년 기간은 1년 또는 6월로 한다. 단,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교원은 연구년 기간을 단기 연구년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4.01.)

②연구년 교원의 연구년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년 교원의 처우) ①연구년 교원에게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 총장이 지정한 과제를 연구하는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연구년 교원은 연구년이 종료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②연구년 교원은 복직 후 연구년 기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년 중 지급받은 보수 전액 및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당해 과제의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논문실적 100% 이상(개정 2012.08.10)
2. 예능계열 : 국내저명학술지이상 학술지 논문실적 100% 또는 국내A급 무대(전시장) 공연 및 전시 100%이상 (개정 2014.05.28.)
3.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교원: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SCI(E)급의 주저자 논문 200%(임상의학교원 업적평가규정 별표3의 연구영역 평가점수 환산표 기준) 또는 주연구자로서의 특허 출원증(신설 2016.03.29.)

⑤연구교수가 연구년 종료 후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한다.(개정 2017.03.29.)

1. 연구년 기간 6개월인 경우 : 차기 연구년(6개월)을 수행하지 못하며, 1학

3-2-5~4 제3편 행 정

기동안 책임강의담당시수를 3시간 늘린다.

2. 연구년 기간 1년인 경우 : 차기 연구년(1년)을 수행하지 못하며, 두 학기 동안 매학기 책임강의담당시수를 3시간씩 늘린다.

⑥연구년 교원은 국내 타 학교에 출장하거나 기타 학술 연구활동을 벗어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 논문 지도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⑦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개시 10일전까지 연구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연구를 시행하는 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연수 및 교환교수 기간의 연구년 간주) 교비지원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교환교수를 한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으로 간주하며, 연구년 대상자 선정시 해당교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년의 시효 및 연기) ①연구년 교원이 승인된 연구년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구년 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임명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6.16., 2018.08.23.)

②연구년 개시를 연기하기 위하여 1개월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한학기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02.22.)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02월 28일이전 재직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시행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되는 교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연구년신청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임용년월일 :

연구과제 :

본인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년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 부 : 1. 연구계획서 1부
2. 연구경력서 1부
3. 연구교수추천서 1부
4. 서약서 1부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3-2-5~8 제3편 행 정

(별지서식 제3호)

연 구 경 력 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본인의 연구경력을 별첨서류와 같이 작성하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 첨 : 연구경력명세서 1부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 연구경력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별지서식 제4호)

연구교수추천서

성명 :
소속 및 직위 :
임용년월일 :
연구과제 :

위 교원을 20 년도 제 학기부터 연구교수로 추천합니다.

※ 연구년 기간(해당기간에 표시) : 6개월

1년

20 년 월 일

학과장 (인)

20 년 월 일

대학장 (인)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개정 2013.03.01)

서 약 서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임용년월일 :

연구과제 :

본인은 연구교수로 지정받을 시 연구년 기간중 연구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년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할 것은 물론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국내저명(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고 해당 논문 실적(100% 이상)을 제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신설 2015.04.01.)

*의과대학 소속 임상학교원 작성용

연구년결과보고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연구년 결과를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성명		작성일	
체 류 국			귀국일	
목 적				
기 간	200 . . . ~ 200 . . . (개월)			
연구년 내용 요약				
연구내용	연구기관	일정	비고	
건의사항				

※ 붙 임 : 보고서 및 참고자료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3-2-5~12 제3편 행정

* 연구계획명세서 작성요령

연구계획명세서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연구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명 :
2. 소속 및 직위 :
3. 연구과제 :
4. 연구목적 :
5. 연구방법 :
6.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7. 소요연구비 내역 :
8. 연구진행의 현재상황 :
9. 연구결과의 예상분량(200자 원고지 기준) :

* 연구경력명세서 작성요령

연구경력명세서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은 논문, 저서, 기타의 연구실적의 순서로 기재한다.
2. 각 연구실적은 발표일자순으로 기재한다.
3. 논문 또는 저서는 참고문헌 인용방식에 따라 기재한다.
4. 기타의 연구실적은 전공분야의 연구실적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한다.